

행정자치부

훈계·주의요구

제 목 이관 및 평가절차 없이 처리과에서 기록물 자체 폐기

기 관 명 서구, 동구

훈계 대상자 ① 서구 ○○○○과(현 ○○○○과) 지방○○○○ ○○○

② 서구 ○○○○과 지방○○○○ ○○○○

③ 동구 ○○○○과 지방○○○○ ○○○

내 용

부산광역시 서구 ○○○○과 지방○○○○ ○○○은 2013. 4. 22.부터 2015. 12. 31.까지 부산광역시 서구 ○○○○과 ○○계에서 근무하였고, 부산광역시 서구 ○○○○과 지방○○○○ ○○○○은 2016.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서구 ○○○○과 ○○계에서 근무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동구 ○○○○과 지방○○○○ ○○○○은 2015.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동구 ○○○○과 ○○○○○○계에서 근무하였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록물을 소관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제27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기록물을 처리과에서 보존기간의 기산일 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 후 기록물 철단위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기록관의 장은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록물평가심의를 작성하고 폐기하도록 정하고 있어 모든 공공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록관으로 이관하고, 보존기간 만료시 기록관에서 보존중인 기록물을 대상으로 폐기대상을 선별하여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 등의 심의 등 법령에서 정한 평가 절차를 거쳐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가족관계등록 관련 기록물(각종 부책 및 서류 등)의 경우,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규칙」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한 서류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폐기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록물은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록물 평가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부산광역시 서구(○○○○과)에서는 2015. 4. 22. 법원으로부터 폐기 인가받은 가족관계 관련 기록물 34권을, 2016. 4. 14.에 법원으로부터 폐기 인가받은 가족관계 관련 기록물 9권을 기록관으로의 이관 및 평가·폐기절차 없이

자체 폐기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동구(○○○○과)는 2015. 4. 24. 법원으로부터 폐기 인가받은 가족관계 관련 기록물 39권을, 2016. 4. 18. 에 법원으로부터 폐기 인가받은 가족관계 관련 기록물 39권을 기록관으로의 이관 및 평가·폐기절차 없이 자체 폐기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서구청장, 동구청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은 기록관으로 이관한 후,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평가심의회 심의에 따라 기록물 평가·폐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